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5985

발의연월일: 2022. 6. 15.

발 의 자: 권칠승·김승남·김의겸

김정호 · 김철민 · 김태년

김회재 • 도종환 • 박광온

소병훈 • 이용우 • 이원택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·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탄소중립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등 급격한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로 중소기업의 사 업전환 지원이 더욱 절실한 실정임.

그런데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한 전문가 육성, 사업전환 선진기법 및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.

이에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 및 원활한 재기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업무에 사업전환 전문가 육성, 사업전환 선진기법 및 교육프로그램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통한 신사업 진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2항제6호·제7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사업전환 전문가 육성에 관한 사항
- 7. 사업전환 선진기법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보급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	제6조(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
의 설치) ① (생 략)	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	②
호와 같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6. 사업 전환 전문가 육성에 관
	<u>한 사항</u>
<u> <신 설></u>	7. 사업전환 선진기법 및 교육
	프로개름 등 보급에 관한 사
	<u> ই</u> }-
<u>6</u> . (생 략)	<u>8</u> . (현행 제6호와 같음)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